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2004. 6.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동 (신청접수 및 조사)과 구(결정)에서 분담 처리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업무의 신속·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나.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용자금 대부신청
- 종전 : 동장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
 - 개정 : 구청장에게 제출(동장 추천 폐지) (안 제3조 및 제6조)
- 나. 용어정비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 제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